

2007. 9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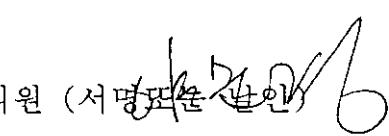
수 신 : 제천시의회 의장

제 목 : 제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발의

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
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.

붙 임 1. 발의의원 서명서 1부.

2. 제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제안자 : 양순경 의원 (서명 )

와 4인

제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
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 의 안 발의 서명서

이기현	이기현	
성명주	성명주	
김영선	김영선	
강현수	강현수	
김용우	김용우	

제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1167
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07. 9.
제 안 자 : 양순경의원외 4인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전문개정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 조항을 적합하게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「지방자치법」의 전문개정에 따라 해당 규정의 근거법규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 규정에 맞게 조정함.(안 제1조, 제2조)

○ 제1조(목적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7조를 ⇒ 제42조로 개정

○ 제2조(범위)

- 3호의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⇒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개정

붙임 1. 제천시의회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신 · 구 조문 대비표 끝.

제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37조”를 “제42조”로 하며,

제2조 중 3호의 법 “제104조 내지 제107조”를 법 “제113조 내지 제116조”로 개정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</p> <p>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을 대리하여 제천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</p> <p>..... 제42조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 한다.</p>
<p>제2조(범위)</p> <p>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부시장 2.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실장 및 과장급 3. 법 제104조 내지 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4.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본청의 실장·과장과 동일직급 이상 인자 	<p>제2조(범위)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</p> <p>.....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